

제 655 호
1978. 5. 1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구좌촌
편집 : 문화공보관 조용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1238 호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소속 치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	3
제 1239 호 : 서울특별시립근로자 후생시설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	3
◎ 교 시	
제 185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4
제 186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지적승인.....	5
◎ 공 고	
제 171 호 : 관광종사원 자격시험합격자공고.....	5
제 172 호 :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취소공고.....	9
제 173 호 :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상품 수거 및 파기명령 (처분)공고.....	9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립근로자 후생시설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8년 5월 1일

◎서울특별시조례제 1238 호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시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1978. 5. 1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교육감 이창갑 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소속지방
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
원 수당 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 1. 조정수당 지급 기준표중 가산액란
제 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고용
원대개는 월 20,000원의 수당을
가산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칙 시
행한다. 다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조정수당 가산금은 1978
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조례제 1239 호

서울특별시립 근로자 후생시설 설
치 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 근로자 후생시설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 제 1항 별표 1 중 서울특
별시립 제 2근로자회관 을 삭제한
다.

제 4조 제 2항 별표 2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칙
시행한다.

별표 2

공 무 원 정 원

직 급	근 로 자 회 관		부 녀 부 지 관	
	정 원	정 원 내 용	정 원	정 원 내 용
3 급 을 류			2	행정 2
4 급 갑 류	2	행정 2	2	행정 2
4 급 을 류	2	행정 2	-	-
5 급 갑 류	-	-	2	행정 2
5 급 을 류	4	행정 4	-	-
고 용 원	12	(난방공 2, 수위 2, 목공 2, 이용사 4, 청부 2)	23	(난방공 3, 수위 3, 이용사 2, 보조 6, 사감 4, 경비 1, 대장정리 1, 청부 2, 취사원 1)
합 계	20		29	

고 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85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35 호 (78. 4. 3) 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도로)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 호 (77. 3. 16) 의 권한 위임 규정에 따라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 5. 1

서울특별시 장

가. 지적승인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목원	연장	기 점	중 점	비고
기정	소로	2		8	114	성북구 동선동 2가 318-1	성북구 동선동 2가 364	
변경	"	"		"	"	"	"	폐지
기정	소로	3		6	18	성북구 동선동 2가 364	성북구 동선동 2가 363	
변경	"	"		"	"	"	"	폐지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86 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379 호(77.10.27) 및 제 137 호(78.4.3)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77.3.16) 외 가. 지적승인조서

권한 위임 규정에 따라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의 성북구청 도시장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5.1
 서울특별시장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서라벌중고등학교	성북구 돈암동산 1-13 의 14 필지	약 42,707 (12,919 평)	기존학교
신설	대일고등학교	성북구 정암동산 16-1	약 26,089 (7,892 평)	"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 제 171 호
 관광중사원자격시험합격자공고
 1978년도 제 1 회 서울특별시 시행 관광중사원(지배인을 제외한 관광 숙박업종사원 및 국내관광안내원) 자격시험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978. 5. 1
 서울특별시장

합격자번호(별첨)
 1. 관광숙박업종사원
 가. 일반응시합격자 : 329 명
 나. 면접전형합격자 : 50 명
 다. 서류전형합격자 : 30 명
 2. 국내관광안내원 응시합격자 : 99 명
 총 508 명

관광숙박업종사원 합격자번호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11	1013	1014	1015	1017	1018
1019	1020	1021	1022	1023	1025	1026
1027	1028	1030	1031	1032	1033	1034
1035	1037	1038	1039	1040	1041	1043
1045	1046	1047	1049	1051	1052	1053
1054	1056	1057	1059	1060	1061	1063
1064	1065	1066	1067	1068	1069	1070
1071	1073	1075	1076	1079	1080	1081
1082	1083	1084	1085	1086	1087	1089
1092	1093	1094	1095	1096	1097	1100
1101	1102	1104	1105	1106	1107	1108
1113	1115	1116	1117	1118	1119	1120
1122	1124	1125	1126	1129	1130	1131
1132	1133	1134	1136	1137	1139	1140
1142	1144	1145	1147	1148	1149	1150
1151	1152	1153	1154	1155	1157	1158
1160	1161	1163	1165	1166	1167	1168
1169	1170	1171	1173	1174	1175	1176
1177	1179	1180	1181	1182	1184	1185
1186	1188	1191	1193	1194	1195	1196
1201	1202	1203	1204	1206	1207	1209
1210	1212	1214	1216	1217	1219	1220
1221	1222	1223	1225	1226	1227	1228
1229	1232	1233	1234	1236	1238	1240

1241	1243	1245	1246	1247	1248	1249
1250	1251	1252	1254	1255	1256	1257
1258	1259	1260	1262	1263	1265	1266
1268	1272	1274	1275	1276	1278	1279
1280	1283	1286	1289	1291	1292	1294
1295	1298	1299	1300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9	1312	1314	1316
1318	1320	1322	1323	1324	1325	1326
1327	1329	1330	1331	1332	1334	1335
1336	1337	1338	1340	1341	1342	1344
1345	1346	1348	1349	1352	1353	1355
1356	1357	1358	1359	1360	1365	1366
1367	1368	1369	1373	1376	1377	1378
1379	1380	1381	1382	1383	1386	1387
1389	1392	1393	1394	1395	1396	1397
1398	1403	1404	1405	1406	1408	1409
1411	1412	1414	1416	1417	1418	1419
1420	1421	1423	1426	1428	1429	1430
1431	1432	1433	1435	1437	1442	1443
1445	1447	1448	1449	1450	1451	1452
1455	1456	1457	1458	1459	1460	1461
1462	1463	1467	1468	1469	1470	1471

(이상 329 명)

<u>면 접 용 시 자</u>						
2001	2003	2004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4	2025
2026	2027	2030	2031	2032	2033	2034
2036	2037	2038	2039	2042	2045	2049
2050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이상 50명)						
<u>서 류 전 형 자</u>						
3001	3003	3004	3005	3006	3007	3008
3009	3010	3011	3012	3013	3014	3015
3016	3017	3018	3019	3021	3022	3023
3024	3025	3026	3027	3030	3031	3032
3033 3034 (이상 30명)						
<u>국 내 관 광 안 내 원</u>						
4001	4003	4005	4006	4008	4009	4010
4011	4014	4015	4018	4020	4021	4022
4024	4025	4028	4030	4031	4032	4033
4035	4036	4037	4038	4039	4041	4042
4043	4045	4046	4048	4050	4051	4052
4053	4054	4055	4056	4057	4059	4061
4062	4063	4064	4065	4066	4067	4068
4069	4071	4072	4073	4075	4076	4077

4078	4079	4080	4081	4084	4086	4087
4088	4089	4090	4091	4092	4094	4095
4098	4099	4100	4101	4104	4106	4107
4109	4111	4113	4114	4115	4116	4117
4119	4120	4121	4122	4124	4127	4128
4130	4131	4132	4133	4135	4137	4144
4145 (이상 99명)						

○서울특별시공고 제 172 호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 취소 공고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 8 조, 동법 시행령 제 18 조 3 호의 규정에

의거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를 취소 하고, 동법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8. 4. 27.

서울특별시장

다 음

업체명	대표자	허가번호	소재지	취소사유
서울전기제작소	김영수	1-7-13	도봉구 중계동 58-38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 8 조 1 항 5 호
원효전자공업사	김학수	1-12-10	영등포구 가리봉동 60-52	

○서울특별시공고 제 173 호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상품 수거 및 파기명령(처분) 공고

공산품 품질관리법 제 6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 결과 불

합격 상품 제조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거 및 파기명령(처분) 하였기 이를 공고함.

1978. 5. 1.

서울특별시장

1. 처분대상 상품				
제 조 업 자		상 품		
업 체 명	소 재 지	품 명	규 격	불 합 격 항 목
세 광알미늄공업 (주)	영등포구 신도림동 271-25	알미늄 판제 냄비	22cm	피막두께, 내식성, 내마모성 무게, 피막두께, 내식성, 내마모성.
		주전자	2ℓ	
		대야	36cm	
신 화 공 업 사	영등포구 독산동 11-68	알미늄주물, 숟	4 호	무게, 부피, 치수
삼 오 기 업 사	성동구 성수동 2가 300-1	알미늄판제주전자	2ℓ	피막두께, 내식성, 내마모 성
신 동 벨브 공업사	영등포구 분래동 2가 42	주철 10kg/cm ² 게이트 벨브	φ 80	치수, 몸통내압, 디스크 누설
경 남 벨브 공업사	영등포구 신정동 235-50	.	.	치수, 디스크누설
대 양 기 계 공업사	성동구 능동 65-4	.	.	치수
고 성 공 작 소	영등포구 당산동 104-10	.	.	치수, 몸통내압, 디스크 누설
2. 처분내용 : 수거 및 파기명령(처분)				
3. 수거 및 파기기간 : 1978.5.1-78.5.31 (1개월산)				
4. 처분사유 : 공산품 품질검사 기준 미달.				